



## 제 2 부

---

# 주요 언론조정사례

### 제1장 정정보도문 게재 사례

## 정정보도문 게재 사례

### 정정보도 사례 01 2024경남조정15 정정청구

신청인 유형	지방자치단체
피신청인 매체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정정 및 반론보도)

보도자료에 제시된 통계 지표를 잘못 해석해 보도하여 특정 지자체가 피해를 입게 된바, 해당 지표에 대한 부가적 설명과 해당 지자체의 입장을 담아 정정 및 반론보도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

#### 보도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시군구별 1인당 소득(1인당 GRDP)이 ○○시의 경우 25,217,000원으로서 경남 18개 시군 중에서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 1인당 소득은 A 시장 임기 중인 지난 2020년 처음으로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꼴찌로 추락했으며 2021년에도 가장 낮은 1인당 소득으로 나타나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1인당 소득과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명백히 다른 지표인데도 피신청인은 이를 구분하지 못했다면서 시군별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지역내총생산 수치를 해당 시군 인구로 나눈 지표이기에 소득 및 생활수준 등과 직접 비교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유의사항을 보도자료에 포함해 안내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1년 기준 신청인 지자체의 지역내총생산은 도내 5위 이내인데도 피신청인은 도내에서 꼴찌라고 사실과 다르게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의 '1인당 총생산'은 2015년에도 최하위를 기록한 적이 있기에 A 시장 임기 중인 2020년 처음으로 도내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신청인은, 통계 지표에 대한 피신청인의 부정확한 보도로 인해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신청인의 시정과 정책에 대한 신뢰가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지역 주민의 평균소득을 나타내는 지표로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기에 1인당 지역내총생산 지수가 주민 소득을 표현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피신청인이 보도하게 된 근본 취지는 ○○시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A 시장 재임 기간에 도내 최하위로 떨어져 시민들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짚어서 행정당국이 시민들을 위해 더욱 분발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라며, 보도 내용에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바로잡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중재부는 '지역내총생산(GRDP)'과 '지역총소득(GRI)'은 통계적으로 다른 지표이고, 두 지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1인당 지역내총생산'을 '1인당 지역소득'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정정이 필요해 보이고, A 시장 임기 중에 처음으로 꼴찌를 했다는 부분도 사실관계를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중재부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하여 중재부 조율하에 양측이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행하는 것으로 합의에 이르러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시의 1인당 소득(1인당 GRDP)가 경남 18개 시·군 중에서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시군구별 1인당 소득(1인당 GRDP)에서 ○○시 소득이 2,521만 7천 원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시의 1인당 소득은 경남 전체 18개 시·군 가운데 최하위 수치이다. ○○시 1인당 소득은 A 시장 임기 중인 지난 2020년 처음으로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꼴찌'로 추락했다. 그 이후 2021년에도 최하위를 기록해 2년 연속 경남 시군 중 가장 낮은 1인당 소득을 기록하고 있다. **[후략]**

### 조정성립사항

####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정정 및 반론보도] ○○시 1인당 소득(GRDP) 보도 관련

**본문내용:** 본지는 지난 4월 29일 「○○시 1인당 소득(GRDP) 경남 18개 시·군중 '꼴찌' 기록」 제목으로 2021년 ○○시 1인당 소득(GRDP)이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꼴찌'로 추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GRDP(지역내총생산)는 각 시·군 내에서 경제활동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생산액)가 발생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고,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지역내총생산을 해당 시·군 인구나 나누는 것으로서 경제구역 내에서 주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거주자가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 수치를 나타내는 지역총소득(GRI)과는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시의 1인당 GRDP가 2015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바 있어 2020년에 처음으로 꼴찌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바로잡습니다.

## 제장

---

### 정정보도문 게재 사례

또한 ○○시는 “경상남도 자료에 따르면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을 시·군별 소득 및 생활 수준 등을 직접 비교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합하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48시간 동안 고정하여 게재하며,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48시간 게재 이후에도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이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서 계속 확인될 수 있도록 한다.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 게재한다. 단 정정 및 반론보도문은 글씨체, 박스, 음영처리 등을 통해 원 조정대상보도와 구별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향후 GRDP에 관한 내용을 보도 시 ‘1인당 지역총생산’ 또는 ‘1인당 GRDP’로 언급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단, 계약에 의한 기사 공급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그 경우에도 네이버, 다음 포털의 뉴스섹션에 한함)에게도 조치사항을 전송한다.

**정정보도 사례 02** 2024서울조정2047·2048·2049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방송사닷컴(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성립(정정보도, 반론보도)

전교 부회장 당선이 취소된 초등생의 학부모가 해당 학교와 교육청 등에 무더기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 관련,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은 지엽적이어서 통상적인 형식으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행하게 되면 독자들로 하여금 보도내용의 핵심이 잘못되었다고 인식하게 할 수 있어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분리하여 이행하기로 한 사례

**보도내용**

과거 자녀가 전교 임원 선거에서 당선 취소됐다는 이유로 고소·고발에 더해, 300여 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한 학부모 사례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최근에도 자녀의 전교 임원 선거와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가 동시다발로 일어나고 있다. ○○교육청은 이러한 정보공개 청구가 악성민원성으로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초 ○○의 교육지원청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대다수 지원청에 접수된 특정 정보공개 청구에는 2021년부터 모든 초등학교의 전교 임원 선거에서 접수된 이의제기 건수 등 모두 여섯 가지의 요구가 포함됐다. 그런데, 이 청구를 한 청구인 B 씨는 지난해 손녀가 부회장에 당선된 후 취소되자 100건 이상의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한 인물과 동일인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청구에 대해 C 교육감은 정보공개 청구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 건은 “갑질성”으로 보인다고, 구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B 씨는 본인은 손주의 임원 선거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탄원을 보내 C 교육감 임기 안에 단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청이유**

신청인1.(A)은 자녀가 전교 임원 선거에서 당선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고소와 고발 및 300여 건의 무더기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신청인2.(B)는 A의 모친으로 초등학교 임원 선거에서 당선 취소된 것은 손녀가 아닌 손자이고, 교육청 등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100건 이상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보도에서 거론된 ‘전국 초등학교의 임원 선거에서 접수된 이의제기 건수 등 6개 항목’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대부분 학교에서는 ‘부존재’로 화신했고, 특정 학교에서만 1개 항목에 대해 1건이 있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B는 본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언론사와도 인터뷰한 적이 없고, ‘C 교육감을 임기 기간 안에 단죄시켜야 한다’고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피신청인의 보도로 신청인들에 대한 악성댓글이 달리게 되고, 신청인들의 가족에 대한 비하·혐오 등 모욕적인 표현이 난무하고 있어 가족 모두가 정신적으로 큰 고통받고 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와 신청인별로 2,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A가 학교를 상대로 29회에 걸쳐 정보공개 청구 300여 건, 고소·고발 7건, 행정심판 청구 8건을 제기했고,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국민신문고 민원 24건을 제기한 것을 확인한 만큼 다수의 민원을 제기한 바 없다는 A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피신청인은, 정보공개 청구가 100여 건이 되지 않는다는 B의 주장에 대해 9개의 교육지원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지원청 관할 초등학교 모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산하 초등학교 숫자를 토대로 100건 이상의 정보공개 청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청인 A와 B는 각각에 대해 잘못된 사실을 보도하였으므로 두 당사자를 별도 주체로 구분해서 각각에 해당하는 정정보도 등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는 피신청인과 통화한 적이 없었는데도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됐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는 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피신청인은 B와 직접 통화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분을 명확하게 밝히고 인터뷰가 이루어졌다면서 관련 녹취자료를 제출하였다.

중재부는 인터뷰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 개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해당 부분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고, 보도 주제와 크게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C 교육감 헌법재판소 탄원' 내용도 삭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독자의 오해를 우려해 문구 삽입을 원한다면 반론으로 반영하겠으며, '손녀'가 아닌 '손자'인 부분은 정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신청인은 정정 및 반론보도로 게재될 경우 독자들이 핵심적인 내용에 허위가 있는 걸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각각 분리하여 게재하는 방법을 제안했고, 신청인도 그 안을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지난해 자녀가 전교 부회장 선거에서 당선 취소됐다는 이유로 고소·고발에 더해, 300여 건의 무더기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한 학부모 사례가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죠.

최근에도 이처럼 임원선거와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가 동시다발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교육청은 악성민원성으로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 등 강경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략]**  
[리포트]

이달 초 ○○의 한 교육지원청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모든 초등학교의 전교 임원선거에서 접수된 이익제기 건수, 긴급회의를 소집한

건수 등 모두 여섯 가지 요구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중략]**

이 같은 정보공개 청구는 ○○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대다수 지원청에 접수됐습니다.

### **[중략]**

그런데, 교육계에 따르면, 이번 정보공개 청구를 한 A씨의 행동은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손녀가 학교 임원 선거의 부회장 당선이 취소된 뒤 정보공개 청구 100건 이상을 제기한 인물과 동일인으로 전해졌습니다.

C 교육감은 정보공개 청구 제도가 필요하다면서도, 이른바 ‘갑질성 민원’과는 구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C 교육감]

“(이번 건은) 갑질성 정보공개 청구로 보이는데 일단 이 부분이 학교에 부정적 결과를 나오지 않도록 차단하고 그 다음에 법적 검토가 끝나면 고발 조치 등의 후속 행위를 하고자 합니다.”

A씨는 피신청인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본인은 손주의 임원 선거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는 아니라고 부인했고,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보내 C 교육감 임기 기간 안에 단죄 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후략]**

## 조정성립사항

### 정정보도문

**보도제목:** [정정보도] 〈악성 민원 수단 된 ‘정보공개 청구’…교육감들 “강력 대응”〉 관련

**본문내용:** 본 방송은 지난 5월 20일자 전체뉴스면에 〈악성 민원 수단 된 ‘정보공개 청구’…교육감들 “강력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손녀’가 아니라 ‘손자’임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반론보도] 〈악성 민원 수단 된 ‘정보공개 청구’…교육감들 “강력 대응”〉 관련

**본문내용:** 본 방송은 지난 5월 20일자 전체뉴스면에 〈악성 민원 수단 된 ‘정보공개 청구’…교육감들 “강력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자녀가 전교 부회장 선거에서 당선 취소됐다는 이유로 고소·고발 및 300여 건의 무더기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한 학부모 사례가 알려진 가운데, A씨가 지난해 자신의 손녀가 학교 임원선거의 부회장 당선이 취소된 뒤 100건 이상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번에도 같은 목적으로 전국 대부분의 초등학교에 악성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이번 손자의 임원선거와 C 교육감에 대한 헌법재판소탄원은 무관하고, 100건 이상의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이번에 요청한 정보공개청구가 처음이고, 필요에 의해 요청한 것이지

### 정정보도문 게재 사례

누구를 괴롭힐 목적이 아니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기사 첫 문장의 학부모는 “2023년 2월 자녀가 전교 부회장에 뽑혔는데,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을 모두 준수하였음에도 공고 유예처분 후 공식 결정이 이루어지고, 학교로부터 당선 무효를 강요당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아울러 2023년 8월 기준으로 보도된 것과 달리 14건의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다. 그리고 해당 자녀는 2023년 3월 재선거를 통해 당선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문 제목을 방송사 홈페이지 전체뉴스면 상단에 최초 게재시점부터 24시간 동안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각 정정보도문과 반론보도문 본문이 나타나도록 한다. 본문의 활자 및 크기는 조정대상보도와 동일하게 하며 24시간 후에도 기사 DB에 보관하여 계속 검색되도록 한다.
- 방송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각 조정대상보도 하단에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문 본문을 이어서 게재하고 계속 확인되도록 한다. 활자 및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과 동일하게 하며 박스 처리, 음영 처리 등으로 구분되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조치사항을 전송한다.

**정정보도 사례 03 2024광주조정45 정정청구**

신청인 유형	일반기업체
피신청인 매체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취하(정정보도)

인조잔디 축구장에 쓰이는 자재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보도 관련, 피신청인의 적극적인 협의로 인터넷기사 열람차단 후 정정보도는 물론 신문 지면에도 정정보도가 게재된 사례

**보도내용**

○○에 건립 중인 체육연수원의 운동장 배수판에 들어가는 '블록형 자재'가 2026년부터 적용되는 국제축구연맹(FIFA)과 대한축구협회(KFA)의 '인조잔디 경기장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록형 배수판이 충격에 취약해 파손 가능성이 크고, 사용자의 부상 위험이 높으며, 접합면 누수로 인한 지반 침하 현상도 나타난다고 한다.

블록형 대신 충격흡수형이 대안으로 쓰이는 추세인데, 전국 594개 인조잔디 축구장 가운데 400개 축구장이 충격흡수 배수판을 쓰고, 블록형 배수판으로 시공된 축구장은 194곳에 불과하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블록형 배수판 제조사로서 피신청인이 보도를 통해 산업표준에 따른 인조잔디 시스템에 배수 자재에 대한 내용이 없고 배수판은 인조잔디 시스템 하부에 설치되는 것으로 평가대상이 아님에도 배수판 자재가 품질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한 점, 배수자재에 대해 압축강도나 충격 등 공식 기관의 시험을 거쳐 안정성이 입증되었음에도 블록형 배수판이 충격에 취약하다고 한 점, 전국 594개 인조잔디 축구장 중 435개소가 블록형 배수판으로 계약한 바 있음에도 194개소만이 블록형 배수판을 사용한다고 한 점 등을 짚으며 피신청인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회사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직접적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심리 개최 전 조정대상보도에 대해 열람차단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내용과 독자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을 담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아울러 피신청인은 조정대상 기사가 게재되지 않았던 일반신문에도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를 게재하겠다고 약속하여 신청인은 심리 전에 신청을 취하여 종결되었다. 피신청인은 약속한 바를 모두 이행하였다.

####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 게재보도문

##### 정정보도문

[바로잡습니다] △△일보 3월 13일자 14면 '○○ 체육인재개발원 종합운동장 설계 부적합 논란 기사'와 관련 인조잔디 경기장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자재로 설계했다는 내용은 전문가들의 사실 확인 결과, 블록형(플라스틱)배수판은 인조잔디 시스템 하부에 설치되는 현장포설형 배수자재로 인조잔디 경기장 품질기준에 적용되지 않는 배수자재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인조잔디 경기장 품질기준은 인조잔디 시스템에 한정하고 있는 내용이었다는 점을 바로잡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더욱 충실하고 정확한 보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정보도 사례 04** 2024서울조정2092·2093 정정·손배청구

<b>신청인 유형</b>	기타 일반단체
<b>피신청인 매체유형</b>	인터넷신문
<b>처리결과</b>	조정성립(정정 및 반론보도, 기사수정, 손해배상 30만 원)

단체장이 명절 선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횡령을 하였고, 공사비를 과대 산정해 착복하였으며, 발간사업비를 과대계상하여 집행하는 등 각종 비리 의혹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 피신청인이 제보의 진위를 충분히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되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고, 나아가 기사수정과 손해배상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법무부 산하 협의회 A 회장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명절선물로 모 백화점 매장에서 홍삼 세트를 구매했는데, 2023년에는 자신이 몸 담고 있는 회사의 법인카드로 선물을 구매한 후 청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여 해당 금액을 자신의 통장으로 받아 횡령이 의심된다.

A 회장은 협의회 사업을 과대 반영한 의혹도 있다. 역사관 공사와 관련해 1천만 원 내외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것도 모자라 4천여만 원으로 부풀려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부풀린 공사 이익금의 향방이 궁금하다.

협의회가 “45년사”를 발간하면서 500부로 부수를 확대하고 2,500만 원을 사용해 2배 이상 과대계상이라는 논란이 있으며, 종교계를 장악하기 위해 종교계 언론사 사장을 겸임할 수 없다는 규정을 총회 자료집에서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은 협의회장 자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불교방송 사장이 되기 위함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병원에 그림을 기부하면서 그림값을 부풀려 기부금을 확정받고, 모 골프용지 사기 사건 등에도 연루된 의혹이 제보로 밝혀진 바 있다.

아울러 A 회장은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B 씨를 운영실장으로 임명하였는데 원칙대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회원들에게 연 2회 지급하는 명절 선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한 판매점을 찾았으나 예산집행 상 외상거래가 제한되어 협의회장의 개인 카드로 선결제 후 차후에 대금을 돌려받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사관 공사의 경우 임원 회의를 통해 승인된 것이었으며 업체가 발급한 견적서 대로 공사가 진행됐고 예산이 부족한 바닥 공사를 협의회장이 협찬을 하여 마무리가 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신청인은 “40년사”의 재고수량이 거의 소진되어 5년의 역사를 추가해 “45년사”를 발간할 수밖에

02  
주요 언론조정사례 - 제1장 정정보도문 게재 사례

없었는데 정기총회의 승인을 득하고 시장 평균 가격에 부합한 업체와 계약을 하여 진행한 만큼 발간 이유나 과정에 아무런 흠결이 없다고 반박했다.

신청인 협의회장의 언론사 사장 겸직에 대해 피신청인이 지적했으나 전국연합회 및 협의회 규정상 겸직 불가 규정은 없으며, 기사에서 제시한 운영규칙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청인 협의회장이 병원에 기부한 미술품 관련하여 기부액을 부풀렸다는 주장과 골프용지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이 음해를 위해 제기하는 의혹에 불과하다면서 피신청인의 보도로 인해 신청인 협의회 및 회장, 소속 회원들의 명예가 훼손된 데 대하여 정정보도와 함께 6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심리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녹취록, 공문, 3개년 간의 정기총회 결과 책자 등 제보 외에도 충분한 자료 검토를 거쳤으며, 신청인 협의회 임원과 사무처장, 사회단체 등 관련자들에 대한 취재도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피신청인은 다른 제보들도 있지만 신청인 측의 주장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서는 추가로 취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중재부에 제출한 제보 자료는 대부분 허위사실에 기초한 것인데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반박자료를 제출했다.

중재부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곤란하지만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에 의존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게재할 것을 제안했다.

신청인 측은 악의적인 제보에 근거한 보도로 단체와 대표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기에 소액이라도 손해배상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중재부는 피신청인의 불출석으로 2차까지 진행된 심리에 신청인은 원거리에서 꾸준히 참석했던 상황 등을 고려해 상징적인 액수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중재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정정 및 반론보도의 이행, 조정대상기사 제목 수정, 그리고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법무부 산하 (생략)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 A 회장의 의혹들이 가득하다. [중략] 제보에 의하면 A 회장은

1. 22년 추석, 23년 구정과 추석 그리고 24년 구정까지 모두 △△△백화점 □□□(대표 ◇◇◇ 010-\*\*\*\*-\*\*\*\*)에서 홍삼 선물셋트를 발주하였다.

한 번의 경우만 살펴봐더라도 2023년 추석을 앞두고 ☆☆건설 관련 법인카드로 상품을 구매한 후 그 청구서를 협의회에 청구(제시)하여 자신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법인에 배임하고 그

돈을 자신(개인)이 사용하는 통장으로 입금하는 형태로 횡령하는 사례들이다.

2. 협의회의 사업들을 과대 반영한 사례로 인한 의혹 역시 수두룩하다.

역사관 공사 관련 의혹 역시 협의회는 이 공사의 견적서와 설계도를 본보에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제보에 의하면 1천만 원 내·외 정도의 공사를 수의계약 형태로 3배 이상인 4천여만 원으로 부풀려진 금액으로 협의회 회비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중략]**

3.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50년사”라면 모르지만, 자신의 임기 중에 발간 기간을 어기면서까지 A 회장은 “45년사” 발간에 필요 이상인 500부로 확대하여 기록물인 이런 책자에 2천5백만 원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어느 곳과 비교하여도 2배 이상의 과대계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4. 더 무서운 제보는 A가 협의회 회장을 하면서 돈이 되는 ∇∇계를 휘두르려는 목적으로 의심되는 행위로서 언론사(○○∇∇방송) 사장을 견할 수 없다는 규정을 감추고자 22년까지는 분명히 확인되는 “법무부 (생략) ○○지역협의회” 규정 제7조 ⑥항과 제8조 ⑦항을 정기총회 홍보물에서 임의로 규정을 삭제하는 악의적인 사문서위조 행위까지 서슴없이 저지르면서 협의회장 자리를 유지하거나 ○○∇∇방송 사장이 되었다는 제보이다.

이외에도 A 회장은 ◎◎◎병원 2층에 비치된 그림과 기부자 명단을 보면 자신의 회사에서 공사한 공사비와 기부한 그림값을 최대한 임의로 부풀려서 기부금을 확정받았고 이는 국민이 보면 짙은 화장을 한 기부 천사처럼 보이게 하여 국민 전체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해왔다는 제보와 투자라고 주장하여 무혐의와 무죄로 끝난 듯 보이는 사건들이지만 <<골프용지 사기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는 본보가 현재 탐사 취재 중이다. **[중략]**

운영처장으로 불리는 운영실장의 대리자 B는 취재통화에서 2024년 2월 1일 회장으로부터 자격 요건도 안된 상태로 직권 임명되어 대리업무 중일 뿐이어서 규정에서 정한 감사 2명과 통장관리를 하는 운영실장, 회계지출을 결의하는 회장이 서로 견제되는 회계감사 원칙이 지켜지는지는 의문이다. **[후략]**

※ 위원회 조정을 통해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와 기사수정, 손해배상 30만 원 지급이 이행되었는데, 이후 피신청인이 본 조정대상보도를 열람차단하였음

## 조정성립사항

###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정정 및 반론보도문] <법무부가 ‘범죄 예방하고자 만든 기구에서 범죄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라는 의혹이다.> 관련

**본문내용:** 본 매체는 지난 2024년 6월 26일자 특종, 기획면에 <법무부가 ‘범죄 예방하고자 만든 기구에서 범죄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라는 의혹이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A 회장이 회원들 선물구매 시 ☆☆건설 법인카드를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언론사 사장은 협의회 회장을 견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이를 임의로 삭제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제장

### 정정보도문 게재 사례

그리고 협의회 측은 “역사관 개선공사와 45년사 발간에 과대계상하여 협의회 회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이 없고, 협의회 회계 지출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A 회장이 자격요건이 안된 상태로 운영처장을 직권으로 임명하고, ◎◎◎병원 그림 기부로 공사비를 부풀려 확정받은 사실이 없으며 <<골프용지 사기 사건>>은 관련이 없다.” 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특종, 기획기사면 기사목록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24시간 고정하여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이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 본문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고 계속 확인되도록 한다. 단, 상자, 음영, 볼드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원보도와 구분되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하여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인터넷 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조치사항을 전송한다.

### 기사수정

#### <조정대상보도 제목 수정>

(수정 전) 법무부가 “범죄 예방하고자 만든 기구에서 범죄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라는 의혹이다.

(수정 후) 법무부가 ‘범죄 예방하고자 만든 기구에서 범죄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라는 의혹이다.

### 손해배상

- 피신청인은 2024. 11. 11.(월)까지 손해배상금으로 금 300,000원을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피신청인이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납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